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윤영희 의원 외 43명

나. 의안번호 : 제2151호

다. 제출일자 : 2024. 9. 4.

라. 회부일자 : 2024. 10. 18.

2. 제안사유

-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사례 등으로 전동킥보드·스쿠터의 안전 관리 문제가 제기 되며, 음주·무면허 운전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음
- 해당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실시 의무화

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0. 23. ~ 10. 2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원안가결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바, 시장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내용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방지를 포함하려는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수용하고자 함

1) 보행자전거과-6731(2024.10.30.)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홍보 실시를 의무화하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 및 홍보토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안전교육 관련(안 제9조제1항)

- 안 제9조제1항은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 급증과 불법주차 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9년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도록 2021년 관련

조례를 개정²⁾하고 견인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5년간 사고유형별 PM 사고 현황³⁾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건수(건)	29	50	134	387	445	406	500
사망자수(명)	1	0	1	1	1	5	3
부상자수(명)	30	56	139	420	489	449	547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경찰청DB

- 서울시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자전거 위주로 실시 하였으나⁴⁾ ‘24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표준교재를 보완·제작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상황임

2) 2021.5.20일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3) 2024년 교통안전연구(제43권 제1호),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4) 보행자전거과-1792(2024.1.31.)호 “2024년 자전거·PM 안전교육 추진계획”

II 2023년 추진성과

추진실적

- 자전거·PM 안전교육 : 56,568명 (※ 목표인원 30,415명 대비 186% 달성)
(단위 : 명)

운영기관	프로그램	교육대상	실적	비고
합 계			56,568	
서울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	자전거 안전교육	유아~성인	40,796	
서울시	PM 안전교육	성인	168	
	자전거 정비교육	성인	133	
	강사 양성교육	성인	39	
	강사 보수교육	성인	34	
서울시, 성동, 송파	교통안전교육 인증제	만9세~성인	779	
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인증제)	학생(초4)	14,619	

-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늘어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줄이고 안전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안전교육 등의 내용 관련(안 제9조제1항제4호)

- 안 제9조제1항제4호는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 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20년과 '21년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증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⁵⁾ 되었음에도 2021년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최근 유명인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

5)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20.6., '21.5.)

-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통행방법, 운전면허 여부, 헬멧 착용의무,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등에 대한 사항과 벌칙을 규정

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음주 및 무면허 운전방지’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할 것임

※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위반 유형별 단속건수

구 분	계	2021.5월 이후	2022년	2023년	2024.8월
합 계	144,943	19,321	51,387	46,689	27,546
음주운전	4,646	665	1,802	1,529	650
무면허	15,453	1,440	4,375	5,952	3,686
안전모미착용	113,070	15,512	40,367	35,856	21,335
승차정원위반	1,130	149	515	341	125
기타	10,644	1,555	4,328	3,011	1,750

※ 출처 : 자치경찰위원회(기타는 야간 점등 위반, 보도주행 등)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요, 안전모 의무 착용(21.5.13. 시행)